

定 款

재단법인 매원장학재단

# 정 관

## 제 일 장 총 칙



제 1 조 (목 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민족문화의 발전을 위한 학문과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유능한 인재의 양성을 위한 장학사업을 시행하며, 도서관 건립등 학문과 문화의 발전을 위한 여건을 조성하거나 지원함으로써 인류의 영원한 복리증진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명 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매원장학재단 (이하 법인이라 한다.) 이라 한다.

제 3 조 (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내에 둔다.

제 4 조 (사 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학문연구비 지원사업.
2. 장학금 지급사업.
3. 연구소, 도서관, 박물관, 실습장 기타 학문과 교육에 필요한 기관의 건립 운영사업.
4. 문화창달을 위한 연구논문 또는 자료집 발간사업 (비매품)
5. 기타 이 법인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부대사업

② 제 1 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다음의 수익사업을 행한다.

1. 부동산의 임대업
2. 위 사업의 부대사업

③ 제 2 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제 5 조 (법인공여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 4 조 제 1 항에 규정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 제 이 장 재산과 회계

제 6 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 잉여금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 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 와 같다.

제 7 조 (재산의 관리) ① 제 6조 제 3 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8 조 (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액으로 한다.

제 9 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10 조 (회계와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 ② 제 1 항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 ③ 제 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11 조 (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12 조 (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제 13 조 (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년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 (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차입금액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 14 조 (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 17 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 15 조 (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 1 호 및 제 2 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 1 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 제 삼 장 임 원

제 16 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5인
2. 감사 2인

② 제 1 항 제 1 호의 이사에는 이사회 회장과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 17 조 (상임이사) ① 제 4 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중 2 인 이내의 상임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담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 18 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 년, 감사의 임기는 2 년으로 한다.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 19 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 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 20 조 (임원 선임의 제한) ① 이사회 구성이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 12 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 16 조의 이사 정수의 3 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 1 항에 규정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 21 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 22 조 (이사장 및 리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 부터 위임받은 사항 (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 23 조 (이사장의 직무대리)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④ 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24 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와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 1 호 및 제 2 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 3 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와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 제 사 장 이 사 회

제 25 조 (이사회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영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 하는 사항

제 26 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② 이사회회의 의사는 출석이사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이사회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제 27 조 (의결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 28 조 (회기) 이사회는 매년 1 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 29 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회 회장 또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이사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 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30 조 (이사회 요구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 24 조 제 4 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 2 항에 의한 이사회 운영은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 31 조 (서면결의 금지)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 제 오 장 자문기구

제 32 조 (구성)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의 목적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분야별 또는 특정사업별로 이 법인의 운영에 관한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제 1 항의 자문위원은 해당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저명인사로 한다.

제 33 조 (자문위원의 선임 및 업무) ① 자문위원은 이사장이 위촉한다.

② 자문위원의 업무 기타 요구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③ 자문위원으로서 특정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는 유급으로 할 수 있다.

#### 제 육 장 사무기구 및 연구소

제 34 조 (구성) 이 법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기구를 두고 사회에 공헌하는 연구소를 둘 수 있다.

제 35 조 (직무) 사무기구와 연구소의 직제 및 운영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 칠 장 보 칙

제 36 조 (정관의 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7 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38 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특별시교육청에 귀속된다.

제 39 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 40 조 (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호의 사항은 이를 중앙일보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법인의 주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널리 일반의 신청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는 사항

제 41 조 (설립당시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주 소	임 기
이사장	금병훈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42 한양아파트 E동 1005호	4 년
이 사	김점순	서울 강남구 신사동 623의 10	4 년
이 사	김진배	서울 도봉구 미아동 322의 6	4 년
이 사	김영천	서울 도봉구 월계동 889의 2	4 년
이 사	배장성	서울 도봉구 미아 2 동 233 의 41	4 년
이 사	임양자	서울 은평구 구산동 23의 26	2 년
이 사	김종정	서울 강남구 역삼동 655의 11	2 년
이 사	이병수	서울 강남구 논현동 105 동현아파트 1101 호	2 년
이 사	김명섭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부아파트 11 동 121 호	2 년
감 사	강기원	서울 종로구 신교동 2 의 30	2 년
감 사	이능희	서울 강남구 반포동 우성아파트 103 동 705 호	1 년